

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

제정 2004.03.08	개정 2012.09.10
개정 2013.05.01	개정 2016.04.20
개정 2017.01.10	전부개정 2017.12.06
개정 2018.10.19	개정 2019.06.13
	개정 2020.06.02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 정관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조직과 업무

제2조(기능)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의 산학협력사업과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·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<개정 2019.06.13>

제3조(단장, 부단장) 단장 및 부단장은 국제대학교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9.06.13>

제4조(연구원, 직원 및 조교) 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예산 범위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,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이들에게 산학협력단의 업무 외에도 본교의 교육·연구 등도 담당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단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9.06.13>

제5조(산학협력전략기획·홍보실) 산학협력 중·단기 전략수립, 공공기관 부처별 사업정보입수를 통해 관련 교직원과 학과에 공지하고 산학협력관련 홍보·협약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.

[본조 신설 2020.06.02.]

제6조(산학협력운영연구지원실) 산학협력과 관련된 교내 혹은 교외의 교육지원 및 연수, 산학관련 논문과 특허출원, 재정지원사업, 프로그램 매니저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.

[본조 신설 2020.06.02.]

제7조(산학협력기술지원실) 가족기업, 중소기업의 R&D, 애로기술 및 학내기술의 매칭 등에 대해 자문업무를 지원한다.

[본조 신설 2020.06.02.]

제8조(산학협력팀) ① 산학협력팀에는 행정업무담당과 예·결산담당을 둘 수 있으며, 산학협력팀장이 업무를 관장하고, 단장의 지휘 하에 산학협력단의 행·재정적인 업무를 보좌한다.<개정 2020.06.02.>

② 산학협력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20.06.02.>

1. 산학협력단 행정 관련 업무 총괄
2. 산학협력단 예·결산과 운영비 수입 및 집행
3.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, 복무, 보수 및 교육훈련 업무
4. 산학협력단 직원 급여 지급 및 연말정산
5. 산학협력단 세무(부가가치세, 원천징수소득세, 기타소득세 등) 업무

6. R&D과제 및 인프라사업 간접비 징수 및 직접비 집행
7. 연구관련 사업 직접비 자금관리 및 결산
8. 기타 산학협력단 행정 업무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9조(운영위원회)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과 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,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학협력단 사업의 기획·조정
2. 기본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
3.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4. 산학협력단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5. 산학협력사업의 신청·평가 및 사업결과에 관한 사항
6. 산학협력단의 사업에 관한 심의·평가·개선에 관한 사항
7.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8. 삭제 <2018.10.19.>
9. 기타 대학사업의 지원과 산학협력단 운영에 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6조의 제5항에 따른다.<개정 2019.06.13>

제12조(회의소집 및 심의·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 회의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제13조(회의록 작성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4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15조 삭제 <2018.10.19.>

제16조(수당 등)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산학연협력위원회

제17조(산학연협력위원회) ① 산학협력단 및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산학연 협동체 제 구축을 위한 협의기구로 산학연협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과 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.

<개정 2018.10.19.>

③ 당연직 위원 및 운영기관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

연임할 수 있다.

제18조(협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산학연 협력사업의 기획 조정
2. 산학연 공동 사업 수행
3. 산학연 인적 물적 교류 및 능력 개발
4. 산학연 협력의 촉진 및 성과의 홍보
5. 산학연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
6.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
7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6조의 제5항에 따른다.<개정 2019.06.13>

제20조(회의소집 및 심의·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제21조(회의록 작성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22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5장 산학협력전담교수<신설 2020.06.02.>

제23조(산학협력전담교수)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단체와 학과의 유기적인 산학 협동체제 구축을 위하여 산학협력전담교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산학협력전담교수는 학과별 1인을 학과장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.

[본조신설 2020.06.02.]

제6장 사업의 심의·평가·개선

제24조(사업의 심의·평가·개선) 사업의 심의·평가·개선은 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며 사업별 심의·평가·개선 사항은 위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7장 부설기관

제25조(부설기관) 대학의 효과적인 산학협력 사업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 산하에 다음 각 호의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1. 산학협력 관련 사업 연구 기관
2. 학교기업

제8장 보 칙

제26조(기록관리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관리는 「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」, 「동법시행령」, 「동법시행규칙」, 및 본 대학교 문서관리규정에 따른다.

제27조(준거법령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법
률」 및 「동법시행령」과 「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28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장이
따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